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1.(수) 11:00 / 2026. 1. 1.(목) 조간 배포 2025. 12. 31.(수) 09:00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특례 연장 및 제도개선 사항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044-201-1723)

붙임 **2025년 일몰 도래 농업분야 국세 특례 연장 및 제도개선 사항**

대상	주요 내용	감면기한 및 변경사항
농업인	▸ 농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년 연장**(~'28년)
	▸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3년 연장**(~'28년)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3년 연장**(~'28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28년)
	▸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28년)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농협 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28년)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3년 연장**(~'28년)
	▸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28년)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제도개선**
농업법인	▸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3년 연장**(~'28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년 연장**(~'28년)
	▸ 작물재배·축산업 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3년 연장**(~'28년)
	▸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3년 연장**(~'28년)
	▸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28년)
농협	▸ 농협조합·조공법인 등 조합법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3년 연장**(~'28년)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 법인 세율 인상 * 9~12% → 9~15%